

제주지방법원 2020. 12. 9 선고 2020나1151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20. 12. 9 선고 2020나11513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20. 3. 9 선고 2019가단60815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찬호

피고, 항소인대한민국

변론 종결 2020. 11. 11.

판결 선고 2020. 12. 9.

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. 3. 9. 선고 2019가단60815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청구 취지 : 피고와 B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 임야 2,783m²가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

항소취지 :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 부분을 제1심판결 2-다.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.

-추가판단 부분-

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(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6다10522 판결 등 참조)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조병대

판사문종철

판사류호중